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468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태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18. 체결된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은 5,281,65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8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6. C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D은행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이 2018. 9. 28.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D은행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9. 5. 10. D은행에게 보험금 15,088,864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8. 7. 18.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

라. C은 2018. 7. 18.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 외에 E카드, F카드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C은 2018. 8. 16. 사망하였다.

마. 2020. 7.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담보력 있는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담보력 있는 유일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아들인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망인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해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와 망인의 관계, 피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년 경부터 2018. 5.경까지 송금한 약 3,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망인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른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자동차의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년경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5,281,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5,281,650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28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철

자동차 목록

차 명 볼보 S60D5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부산 해운대구 호

재원관리번호 009-2-00023-0022-1310

연 식 2011년식

차 종 승용 대형

차대번호 끝.

